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6회 제1차 정례회(폐회중)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1. 16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안미자 의원 외 8명

행정경제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안미자의원 외 8명

○ 제안일 : 2026. 11. 6.

○ 회부일 : 2026. 11. 9. (의안번호 : 26 - 140)

2. 제안이유

○ 자율방범대는 우리구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음. 다만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범죄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조례에는 대원들의 활동의 안전 장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음. 이에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구 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긴급출동경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 제1항)

4. 관계법령

○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4조

○ 입법예고 : 2026. 11. 9.(월) ~ 2026. 11. 13.(금)

5. 검토보고

1 조례의 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안미자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자율방범대는 우리구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음. 다만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범죄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조례에는 대원들의 활동의 안전 장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음. 이에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구 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 개정내용

○ (안 제6조제1항제2호)에 자율방범대원의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의 지원 근거 신설

○ 기존 제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3 우리구 자율방범대원 수 현황

○ 마포구 등록 자율방범대원은 총 369명이며, 경찰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보험은 없음.(2026. 6. 30. 기준)

○ 현재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을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에 등록하여 봉사시간을 인정받고,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음.

○ 다만, 제설 등 긴급활동 시 사전등록이 어려워 보험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음.

4 타 자치구 조례 검토

< 서울시 내 타 자치구 자율방범대 보험료 운영 현황 >

보험 지원 유형	자치구 명	비 고
별도 예산 편성을 통한 보험 가입 지원	강서구, 중랑구	- 강서구: 480명, 18,480천원 - 중랑구: 520명, 18,720천원
자원봉사자보험 활용 (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)	강남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송파구, 양천구, 영등포구	자원봉사자보험을 통한 활동 중 사고 보장
구민생활안전보험	광진구	과거 별도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, 기존 보험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없어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대체함

5 법적 타당성 검토

○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료 지원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상해보험 가입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 경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른 지원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 기존 자원봉사자보험 및 구민안전보험과의 보장범위

중복 여부를 확인하고, 지원 대상과 보험 가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⑥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○ 자율방범대원은 야간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,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체적 안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.

○ 특히 2025년 새우젓축제 행사장에서 자율방범대원이 관람객에게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< 자율방범대원 상해 사례 >

- 일　　시: 2025. 10. 18.(토)
- 장　　소: 새우젓축제 공연 행사장
- 피 해 자: 망원동 자율방범대장
- 사고경위: 공연 관람객의 입장을 통제하던 중 관람객에게 팔을 물려 부상을 입음.
- 조치결과: 자치행정과·문화예술과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함.

○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대원의 안전한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상해보험 가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대원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방범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특히 실제 방범활동 중 부상 사례가 발생하였고, 긴급활동 시 자원봉사활동 사전등록이 어려워 보험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.

○ 다만, 기존 자원봉사자보험 및 구민안전보험과의 보장범위 중복 여부,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6. 2. 15.] [법률 제21020호, 2025. 8. 14., 일부개정]
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